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성중기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49호

다. 제출일자 : 2018. 10. 8.

라. 회부일자 : 2018. 10. 29.

2.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%, 5·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%,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%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, 보훈보상대상자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재해부상군경과 재해공무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,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차장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재해부상군경,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주차장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1항제11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예고기간 : 2018.11.1.~11.8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주차계획과) : 보류

- 대상자 중복에 따른 실효성 저하 우려
- 요금감면 제도와 서울시 주차정책과의 상충성
- 간접적인 혜택 부여 방안 마련 필요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를 서울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1)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 및 신체적 상해 등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 현재 서울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 1억 1동선이 미확보된 역은²⁾

1) **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
2. **재해부상군경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
4. **재해부상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2) 엘리베이터 1억 1동선 미확보 역사 :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동선(지상↔대합실↔승강장)으로 이동할 수 없는 역사

10%에 불과하나 지하철 역사 각 출입구 방면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아니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이동방향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고,

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저상버스 보유율 역시 44.7%에³⁾ 불과한 만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불가피하게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적정 수준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필요하다 할 것임
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에서 새롭게 포함하고자 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현행 조례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소지도 있음
- 한편 현행 조례에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이미 10호에 걸쳐 정하고 있으나 각 감면 대상별 선정사유 및 할인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 감면 대상과 할인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근거마련도 필요할 것임

구 분	합계	1호선	2호선	3호선	4호선	5호선	6호선	7호선	8호선	
역사수	277	10	50	34	26	51	38	51	17	
1동선 확보	역사수	250	9	48	32	25	45	32	45	14
	비율(%)	90.2	90.0	96.0	94.1	96.1	88.2	84.2	88.2	82.4

3) 2018년 저상버스 추가배정 계획, 버스정책과-26538(2018.10.4.)

【저상버스 운행현황】

(’18.9.12. 기준)

구 분	총 대수(A)	광역버스(B)	저상버스(C)	보유율(C/(A-B))
노 선 수	353	10	260	75.8%
운행대수	7,405	245	3,203	44.7%